

광주광역시서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(간이 오수정화조의 설치) 규정이 법률 제5864호('00. 2. 8)가 삭제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오수·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이에 맞춰 개정코자함.

2. 주요골자

- 제7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 중 간이 오수정화조 설치 의무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
-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관광숙박업,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할 경우 주방·목욕탕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게 하는 간이 오수정화조 설치 의무 삭제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(간이 오수정화조의 설치)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 하는 것으로
- 조례안 제7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 중 간이 오수정화조 설치 의무 미이행자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도 간이 오수정화조의 관리기준보다 더 강화된 규정이 동법 부칙 제2조 합병정화조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의 규정에 의거 오수를 처리하면 자연환경 및 수질 오염의 우려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.

◎ 참고사항

○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규정

-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,
-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
-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
- 동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,

-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,
-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구역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,
- 지하수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에서, 관광숙박업, 식품접객업, 조리판매업, 숙박업 등의 영업을 할 경우 그 주방·목욕탕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규정

○ 합병정화조 설치 규정

설치지역이 간이오수정화조 설치지역과 같은 지역 및 하천, 호수, 바다의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